



##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새롭게 부각되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에 관한 예측보고서 발표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에서는 향후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 조사한 결과를 유럽연합 국가의 22개 언어로 번역하여 발표하고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대처를 당부하였다.

### ■ 보고서 발표 배경

- EU-OSHA에서는 위험예측(Risk Observatory)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EU의 25개 회원국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다.
- 유럽의 위험성 예측 활동(European Risk Observatory)은 새로운 위험성 혹은 확대되는 위험성에 대한 예측 기법 연구로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공유 및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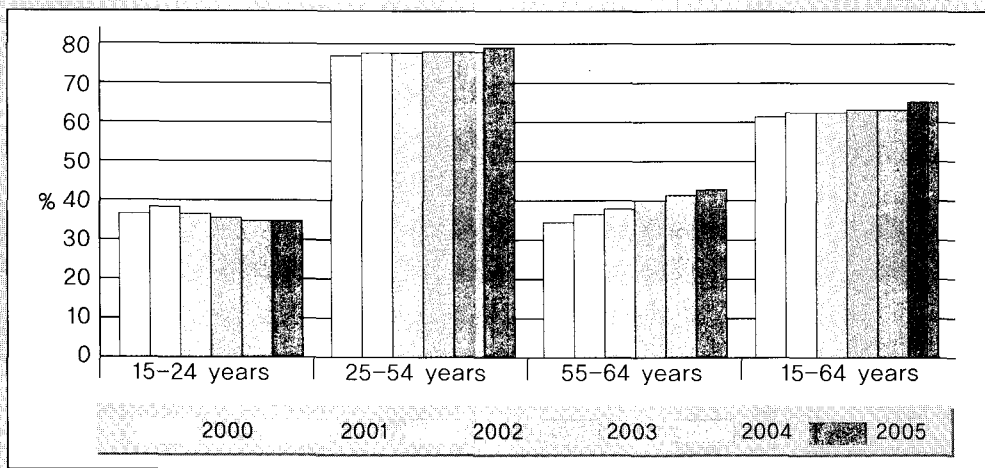
### ■ 향후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1)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련 위험

- 현재 EU의 산업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9.42%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EU의 화학물질 노출 관련 규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EU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투자 및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향후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2) - 노동력 노령화

-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EU 25개국의 15세-64세 근로자는 830만명 가량 증가하였으나, 15-24세 근로자는 70만명 가량 감소하고, 55-64세 근로자는 420만명 가량 증가하는 등 근로자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청년근로자(15-24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근로자의 노령화 추세와 함께 근로자의 성비(性比)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EU 25개국의 연령대별 고용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 이외 향후 주요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 각 산업별 고용 비중의 현저한 차이 발생
- 소음 노출 및 청력손실 등의 위험요인
- 자외선 노출 위험 증가
- 여성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여성 특화 안전보건 대책의 필요성
- 나노기술 관련 위험성 증가 및 직업병 발생 증가 추세 등

〈출처〉 [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outlook/en\\_te8108475enc.pdf/view](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outlook/en_te8108475enc.pdf/view)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업무상 부상 및 질병기록에 근골격계 질환 부문 추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업주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기록하여 연말에 공개하는 OSHA 300 Form에 근골격계 질환 부문을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근골격계 질환 분류에 있어서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질환의 정의를 제공하고 2010년 3월 9일 본 계획에 관한 공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 OSHA 300 Form(업무상 부상 및 질병 기록)

-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OSHA 300 Form을 사업주에게 배포하여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분류하고 이를 작성하게 하여 각 사례별 심각도를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다.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의식불명, 근로손실, 작업제한, 이직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본 양식의 요약본을 연말에 작성한 후 사업장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하여 근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OSHA에서는 2001년 1월 19일 소음 및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반복적 외상질환(repetitive trauma disorder) 부문이 추가된 OSHA 300 Form을 발표하였다. 2001년도에 근골격계 질환과 소음을 분리한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2003년 발효 전 근골격계 질환이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SHA에서는 2010년부터 건염(tendonitis), 손저림증 등 업무상 부상자 및 질환자의 실태파악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OSHA's Form 300 (Rev. 01/2004)**  
**Log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Attention:** This form is required for employers having 10 or more employees, or those having 20 or more employees in certain high-hazard industries. It is not required for employer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or those with 20 or more employees in non-high-hazard industries. For more information, see 29 CFR 1904.101.

**Year 20** \_\_\_\_\_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Form OSHA-300 (Rev. 01/2004)

Identify the person: (A) Last name, first name, middle initial, and suffix (e.g., Mr. John A. Smith); (B) Employee's social security number; (C) Job title; (D) Date of injury or onset of illness; (E) Where the event occurred; (F) Describe the injury or illness, part of body affected, and object or machine that caused injury or case of person ill.

Classify the case: (1) **Death** (Yes/No); (2) **Days away from work** (0-180); (3) **Restricted work** (Yes/No); (4) **Job transfer or reassignment** (Yes/No); (5) **On job death** (Yes/No); (6) **On job transfer or reassignment** (Yes/No); (7) **On job restricted work** (Yes/No); (8) **On job lost workday** (Yes/No).

Line	Employee's name	Job title	Date of injury or onset of illness	Where the event occurred	Describe the injury or illness, part of body affected, and object or machine that caused injury or case of person ill	Classify the case				Enter the number of days the worker was out of work or on job transfer or reassignment		Check the "flag" column or check one "X" or "O"							
						Death	Days away from work	Restricted work	Job transfer or reassignment	On job death	On job transfer or reassignment	On job restricted work	On job lost workday	Flag	Flag	Flag	Flag		
1	Mark Jones	Operator	1/15/04	Assembly	Shoulder pain and bruise from falling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1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Anna Sanchez	Assembly worker	1/15/04	Assembly	Minor bruise and laceration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John Smith	Operator	1/15/04	Assembly	Back strain from lifting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Emily Garcia	Operator	1/15/04	Assembly	Hand laceration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David Flores	Operator	1/15/04	Assembly	Hand laceration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근골격계 질환 부문 기재 기준

- 기존 OSHA 300 Form 기재 시 사망, 의식불명, 근로손실, 작업제한, 이직 등이 발생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모든 부상 및 질병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사업주의 OSHA 300 Form 작성 방식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해당 산업재해가 근골격계 질환에 포함될 경우, 이를 근골격계 질환 부문에 구분해서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 OSHA 300 Form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통, 손저림증, 흉곽출구증후군, 이 중압좌증후군, 결합조직 장애, 활액낭염, 경련, 좌골 신경통, 디스크, 요통 등 근육, 신경, 힘줄, 인대, 관절, 연골, 척수 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OSHA에서는 2010년 3월 9일에 본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출처〉 <http://www.dol.gov/federalregister/HtmlDisplay.aspx?DocId=23496&AgencyId=17>